조기졸업





• 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.

관련규정 바로가기 >



정의

학업이 우수한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[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(5년제)은 8학기 또는 9학기]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한다.

지원자격

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.

- 1.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
- 2. 교과목평점 3.0(계절학기 포함, P등급 제외) 이상
 - (!) 다만, 의학과 학생 및 편입생은 이를 지원할 수 없음

지원절차

학기 개강 전 소정의 기간 내에 "조기졸업이수신청서" 작성 및 소속 학부(과)장 직인날인 후 소속 행정지원실로 제출한다.



후속조치

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19학점(간호학과 및 19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은 21학점)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고, 학년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 다만, 조기졸업자는 학점이월제를 적용받지 못한다.

조기졸업 요건

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,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 한다. 다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자는 다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

조기졸업 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.

- 1. 징계처분(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)을 받은 자
- 2. 이수학기 중 매 학기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4.0, 교과목평점 3.0미만(계절학기 포함, P등급 제외) 인 자
- 3.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
- 4. 한 학기 모든 성적을 P등급 받은 자(계절학기 제외)

관련근거

학칙 제35조,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